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華夷의 交流와 漂流 : 1809년 "濟州島漂船廢鐵 송환사건"을 중심으로

박영철 (군산대)

1. 문제

전근대 동아시아 문명은 한자문화권으로 불리기도 하듯이 중국문명을 중심으로 주변국으로 전파되어 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주지하듯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로 이루어진 조공책봉체제로 불리며 조공질서 하에서 동아시아 사회가 상당한 안정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진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조공질서가 동아시아 세계에서 문명의 전파와 질서유지를 위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조공질서의 본래적 속성으로 인해 문명의 전파를 가로막는 장애의 역할을 한 점도 오히려 적지 않다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1] 그것은 조공질서가 바로 中華와 夷狄의 차별이라는 전통적인 화이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불평등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근래 夫馬進은 조선의 연행사와 통신사의 양과 질에 있어서 압도적 불균형, 불균질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표현하는 '조공질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지만,[2] 이 또한 조공질서의 불균질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공질서의 불균질 또는 동아시아 문명의 폐쇄성이나 疏遠性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표류민 송환제도에서도 나타난다. 근세적 표류민 송환체제는 乾隆연간에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송환체제는 대개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륭2년(1737)의 법령을 기점으로 표류민 송환체제의 형성이라고 보는 연구는,[3] 조공질서라는 국제관계를 강조하기도 하고 인도주의적 가치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동아시아의 이러한 송환체제는 아마 그 이전 당송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며, 송환체제가 국제관계를 토대로 하든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하든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폐쇄성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 원인을 추구해 보면 중국의 가장 친밀한 조공국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을 대하는 경우에 잘 드러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전근대의 한중교류는 반드시 순탄하지만은 않고 항상 근본적인 장애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공국 사신과 사적인 대화를 금지하는 법이라든가, 違禁之物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라든가 하는 법제적 장애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가령 1488년(弘治1, 성종19) 중국 강남에서 표류견문을 기록한 崔溥의 漂海錄은 다음과 같이 中華와 夷狄의 소통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

1) 이성규, 2007,「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열림(開)과 닫힘(塞)」(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엮음,『동아시아의 경제문화 네트워크』,태학사)
2) 夫馬進, 2015, 『朝鮮通信使と朝鮮燕行使』, 名古屋大學出版社.
3) 春名徹, 1994, 「近世東アジアにおける漂流民送還體制の形成」, 『調布日本文化』, 4.; 劉序楓, 劉序楓, 2006, 「清代檔案與環東亞海域的海難事件研究－兼論海難民遣反網絡的形成」, 『故宮學術季刊』, 23-3.; 최성환, 2012, 『문순득표류연구』, 민속원, pp.156-181 등.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국법이 매우 엄하고 律條도 매우 중하여, 夷人에게 기밀을 누설하면 新例에 의해 充軍될 것이니, 무릇 내가 말한 바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기 바라오." 하고 (이 기밀을 지켜달라는 듯) 머리를 끄덕이고는 가 버렸습니다.[4]

그(高壁)가 두려워한 국법이란 明律 吏律의 〈漏泄軍情大事律〉을 가리킬 것이다. 이 律에는 "수도와 수도 밖의 군민 등이 조공하러 온 夷人과 사적으로 통하여 왕래하여 맡기고 봐주고 교사하여 사람을 해쳐서 사정을 누설하는 경우, 모두 조사하여 변방의 위소로 충군한다."라는 例가 附加되어 명의 군민이 명에 조공하러 온 夷人과 사적으로 왕래하여 군정을 누설할 경우 충군의 형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명률의 〈漏泄軍情大事律〉은 唐律 職制의 〈漏泄大事〉에 소급되는데, 청대의 律學家 薛允升은 양자를 비교하여 당률에 비해 명률의 가혹함과 의미의 모호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한·중간의 거리가 당송대에 비해 오히려 소원해진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화이의 교류라는 점에서 〈漏泄軍情大事律〉의 기원이 되는 당률의 〈漏泄大事律〉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항은 국가의 일을 蕃國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므로 蕃國의 使者에게 국가의 일을 알리는 경우는 다른 경우보다 가일등 처벌한다는 조항이다.[6] 국가의 일이라는 규정도 애매하지만, 국가의 사신에게 국가의 일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외교적 의미가 있는 사절인지도 의문이다. 이것은 蕃國의 사신을 사절이라기보다 假想의 적으로 취급하는 중국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는, 중국 正史의 華夷論的 국가관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최부의 표해록은 표착 후 천신만고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쓰고 있거니와, 자신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앞의 高壁이 〈漏泄軍情大事律〉의 저촉을 무릅쓰고 崔溥에게 약간의 사정을 알려준 것도 그 때문이겠지만,[7] 본래 崔溥에게 전달하는 일은 國家之事에 관련되는 사항도 아니고 軍情에 관련된 것도 아님에도, 夷人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꼬투리가 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법제적 장애는 표류민의 구조라는 인도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끼어들고 있었다. 본고는 동아시아 문명 교류의 폐쇄적 성격을 표류민 송환절차에서 나타난 한 사건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이 사건은 표류민이 타고 온 표선의 처리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것은 1808년에서 1809년에 걸쳐 일어난 龔鳳來 표류선박을 燒火한 후 남은 廢鐵을 조선정부가 매입한 것을 중국이 문제 삼은 데서 발생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1809년 濟州島漂船廢鐵 송환사건"으로 부르기로 한다.

---

4) 崔溥(서인범 · 주성지 옮김), 2004, 『표해록』, p.187, 참고. 원문은 『漂海錄』권2, (1488년2월)초8일. "(高)壁曰, 國法甚嚴, 律條甚重, 漏泄夷情, 新例充軍, 凡我所言不可與人見, 只可自知."

5) 大明會典(萬曆內府刻本)의 吏律/公式/漏泄軍情大事. 凡聞知朝廷及總兵將軍調兵討襲外番及收捕反逆賊徒機密大事而輒漏泄於敵人者斬, 若邊將報到軍情重事而漏泄者杖一百徒二年, 仍以先傳說者為首傳至者為從減一等...一在京左外軍民人等, 與朝貢夷人, 私通往來投託管顧撥置害人因而透漏事情者, 俱問發邊衛充軍. (謹按撥置謂挑唆教誘也/《讀例存疑》讀例存疑卷七, 吏律職制/官員襲廕 참조.)

6) 唐律疏議, 권9, 職制/漏泄大事. 諸漏泄大事應密者絞...非大事應密者, 徒一年半, 漏泄於蕃國使者, 加一等, 仍以初傳者為首, 傳至者為從, 即轉傳大事者杖八十, 非大事勿論. [...國家之事, 不欲蕃國聞知, 若漏泄於蕃國使者, 加一等合徒二年, 其大事縱漏泄於蕃國使亦不加至斬.]

7) 또 어떤 군관 千戶는, 몸이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피폐한 곤경에 처한 최부가 조선의 관인이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내가 어찌 그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국법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도울 수 없을 뿐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崔溥, 『漂海錄』, p.101.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2. “1809년 濟州島漂船廢鐵 송환사건”의 시말

이 사건은 1808년(嘉慶13, 純祖8) 11월5일에 江南蘇州府 소속의 龔鳳來 등 16인이 濟州島大靜縣에 표착한 안건에 부수한 것이다. 그들은 중국의 강남과 산동을 왕래하며 상업에 종사하는 연해상인들인데 산동에서 표류하여 제주도에 표착하였다.[8] 조선측이 전례대로 표류인과 표물을 처리하여 청국에 자문을 올린 후에 일어난 것이다. 이에 관한 嘉慶14年3月28日의 『淸實錄』의 기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군기대신 등에 명한다: 예부의 상주, 또 조선국왕 李玧(숙종)의 자문에 의거하면, 작년11월중 江蘇省元和縣의 민인 龔鳳來 등 16인이 篁竹을 실은 배 1척을 山東으로 가던 중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조선국 大靜縣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선척은 파쇄되었고 의복과 식량을 잘 지급하고 이들을 鳳凰城에 보내어 盛京將軍을 경유해 원적지로 보냈다는 것 외에, 그 裝船鐵物 합계 4300여斤도 높은 값을 주었다는 내용의 말이 있었다. 종래 銅鐵器는 모두 매매를 금지하는 물품으로서 例에 정하기를 出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번 龔鳳來들의 선척에 실은 鐵物이 例에 어긋난 물품인지 아닌지 조선국왕의 咨文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이미 聖旨를 받자온대, 龔鳳來들이 원적지에 도착한 후 江蘇省巡撫 汪日章에게 넘겨서 바다에 나간 연유를 審訊하라. 만약 지금 비로소 盛京 일대에 도착했다면 (盛京將軍)富俊이 먼저 審訊하라. 그 소지한 철물이 무엇인지,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지, 조선에서 값을 얼마 주었는지 일일이 사실에 의거하여 공술하게 하고 한편으로 奏聞하고 한편으로 강소성순무 汪日章에게 상세히 조사하게 하라. 富俊은 이어서 조선국왕에게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도록 하라. 조선은 天朝를 섬기기를 가장 공순히 하여서, 이전 嘉慶12년에 內地人民이 銅鐵器 등을 조선국 商民과 사사로이 무역한 일을 적발하여, 違禁物을 例에 따라 京師에 보내어 황제로부터 恩賞을 받은 기록이 있고, 이번에 內地人民 龔鳳來들의 선척이 표류하여 조선국 경내에 이르러 국왕이 의복과 식량을 잘 지급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육로로 내지로 회송한 것은 잘 처리한 일이다. 그러나 龔鳳來들이 소지한 철물이 4300여근이나 되는 것은 백성들이 혹 違禁不法의 일이 있을지 우려되므로 황제의 諭旨를 받들어 앞으로 표류인이 도착할 때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 철물은 조선국에 존류하고 있는데 무슨 물건인지 상세히 명단을 적어 보내고 조선국에서 높은 값을 주었다는 값도 얼마를 준 것인지 함께 적어 보고하여 주문하여 사실을 밝히는데 편하도록 하라.

富俊은 조선국왕의 咨復이 도착하는 즉일 奏聞하라. 아울러 강소성순무 汪日章에게 龔鳳來들을 조사하도록 하라. 이 유지를 알려라.[9]

황제의 유지에 따라 盛京將軍이 조선국왕에 보낸 嘉慶14년4월초6일의 咨文은, 위의 내용을 그대로 적고 덧붙여 龔鳳來 등이 船載한 철기의 목록과 조선에서 매입한 가격을 상세히 적고 아울러 철물을 함께 보내라는 것이었다.[10] 이 자문에는 조선이 嘉慶12년에

8) 그 자세한 표류과정의 問情은 『備邊司謄錄』, 199책, 순조9년 己巳2월15일조, <濟州大靜縣西林前洋漂到大國人問情別單> 참조.

9) 仁宗睿皇帝實錄, 卷208, 嘉慶14年3月28日.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 법을 어기고 금물인 철기를 매매한 중국과 조선의 상인을 적발하여 중국에 송환시켜 황제로부터 은상을 받을 정도로 천조를 가장 공순하게 섬긴 조선을 칭찬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盛京將軍의 자문은 조선측의 성의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淸廷의 태도는 국가에서 금지한 사무역을 하려는 밀매상인과 표류민을 절차에 따라 우대하고 살펴준 국가를 동일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裝船鐵物 즉 본래 선박을 구성하는 철물과 밀매대상으로서의 철물을 혼동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蕃國을 가상의 적으로 취급하는 태도와 전혀 같은 것이다.

盛京將軍의 철물을 송환하라는 아마도 당혹스러운 요구에 대해, 조공국인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철물을 盛京까지 수송하게 되지만, 가장 충실한 조공국(該國王臣事天朝, 最為恭順)인 조선에게 그 공문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어서 4300근(약 2580kg)의 철물을 제주도에서 盛京까지 운송하라고 명하는 것은 천조를 가장 공순하게 섬긴 조선을 범죄인 취급하는 지나친 非禮의 처사가 아닐 것인가?

嘉慶14년5월29일 조선측이 보낸 자문에는 철물을 송환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

우선 小邦 조선이 각별히 법령을 잘 지키며 조례가 금하는 것은 즉각 알리고 감추지 않았다는 것, 龔鳳來 등이 표착한 때에도 그 연유와 什物을 조사한 바 법을 어긴 물건은 결코 없었다는 것, 漂船을 燒火할 때 선척의 장식물이나 못 등이 크고 무거워 운반에 불편해서 그들의 청원에 따라 근당 은 2分으로 값을 매겨 합계 은 86兩2分을 주어 송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송환할 철물에 대해서 지방관에게 명한 바,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서(11월5일 표착해서 5월까지 반년이 지나고 있다) 많이 녹슬고 부서졌고 그래도 본래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총4301斤 중 1716斤이고, 나머지 2585斤은 이미 녹슬고 부서져서 운반할 수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11]

어쨌든 이렇게 해서 표선의 폐철 1716근은 제주도를 출발해 盛京에 도착해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결과는 역시 금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가경14년8월의 禮部咨文은 남은 2585근의 철물에 대해서는 송환 면제 조치를 내리고 폐철운반 賚咨官員들에게 예에 따라 은상을 베풀기로 결정했다.[12] 嘉慶14년11월3일 조선조정은 이렇게 短小鐵物의 송환을 면제해 주고 은상을 베풀어 준 것이 皇上의 柔遠字小하는 盛德至意 및 여러 대신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감격스런 감사의 자문을 보냄으로써,[13] 폐철송환은 1년을 지나 종결을 맞게 된다. 그러나 아마도 조선조정의 이 감사는 단순히 외교적인 수식어에 불과할 것이다. 淸實錄에 언급되어 있는 이 사건이 朝鮮王朝實錄에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폐철송환사건에 대한 조선왕조의 황당하고 불쾌한 내심을 반영할 것이다.

본래 淸廷의 조선조정에 대한 힐문은 禁物인 鐵器를 4300근이나 매입한 불법행위로 의심한 것이지만, 이러한 法例를 조선조정이 몰랐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淸實錄의 "龔鳳來들의 선척에 실은 鐵物이 例에 어긋난 물품인지 아닌지 조선국왕의 咨文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 중국측의 조사에서 밝혀진 대로이지만, 그것이 결코

10) 朝鮮國卽將龔鳳來等船載鐵器是何物件詳細開單竝將鐵物咨送前來." 『同文彙考』』4, 原編續, 漂民四, 上國人/盛京將軍衙門知會粧船鐵物開單入送咨.
11) 『同文彙考』4, 原編續, 漂民四, 上國人/報鐵物查明入送咨.
12) 『同文彙考』4, 原編續, 漂民四, 上國人/禮部知會鐵物查收咨.
13) 『同文彙考』4, 原編續, 漂民四, 上國人/謝許免補解鐵物咨.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違禁之物이 아니라는 상식을 서로 알면서도 무리하게 내세운 대국의 억지라는 면이 강하다. 조선측이 표류인을 중국에 보내면서 보낸 嘉慶十四年正月의 자문에는, "物件之難運者, 及粧船鐵物, 從優折價以給, 其破碎船隻棄置雜物依願燒火"[14]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漂船에서 폐철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히 조선의 경우에는 표선을 포함한 漂物을 燒火시키는 법이 있어서, 1809년의 이 "濟州島漂船廢鐵 송환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淸廷은 수많은 청국의 표류민송환자문을 통해 조선의 船隻燒火와 그 鐵物의 折價買入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충실한 조공국인 조선에 대해 禁物매매의 금령을 적용해 조선조정을 범죄시한 것은 대국의 暴壓이라고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대국의 暴壓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후에는 오히려 漂船廢鐵의 송환을 定例化시켰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15]

同文彙考에는 1809년 이후 표선에서 소화되어 표류인과 함께 송환되는 廢鐵의 사례가 27건 찾을 수 있는데, 그 양은 적게는 45근에서 많게는 6955斤에 달한다. 이들 사례를 보면 "1809년 濟州島漂船廢鐵 송환사건" 이후 철물의 송환은 더욱 엄격해진 것으로 보인다. 1809년 폐철 송환사건은 양국 관계의 가깝고도 먼, 친하면서도 두려운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에 인용한 嘉慶25년(1820)의 前例는 付火燒船鐵物의 송환을 지시하고 있지만, 이 例는 1809년(嘉慶14년)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1809년 이후에야 생긴 例이다. 그러나 그 사건의 경위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例가 스스로 自家撞着的이며 폭압적인 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동아시아 표류인송환체제가 순치제와 건륭제의 一視同仁의 이념을 토대로 한다는,[16] 것의 허구성을 잘 드러낼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철물송환은 조선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조선의 중국해안 표류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일방적인 룰이기 때문이다. 물론 표선의 폐철이 장차 군기물자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淸廷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지만, 쇠냄비 하나까지 들고 돌아가야 하는 중국 표류민의 괴로움은 "四海一家 一視同仁"의 정신과는 매우 괴리된 것이라 할 것이다. 조선은 군사국가도 아니었으며 그렇게까지 폐철을 무기화할 만큼 표류민이 많지도 않았던 것 같다. 참고로 청대 조선선박이 중국에 표착한 수는 通文館志의 기록에 의하면 1710년(康熙49/숙종36)에서 1884년(光緖10/고종21)의 175년간 172건에 달하는데,[17] 이외에 1661년-1871년 사이에 유구에 표착한 31건 중 중국을 경유하여 귀환한 26건을[18] 합하면 198건에 달한다. 기타 중국을 경유하여 귀환한 조선선박의 표류건수는 201건에 달한다.[19] 그런데 이 중 조선의 경우 표류민이 육로로 귀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해로로 귀환하는 경우는 겨우 2건 뿐이다.[20]

---

14) 『同文彙考』4, 原編續, 漂民四, 上國人/【己巳】報大靜縣漂人押解咨.

15) 『同文彙考』4, 原編續, 漂民5, 上國人/【庚辰】盛京禮部知會漂人核辦咨, 嘉慶二十五年十二月十四日의 盛京禮部의 자문에 의하면, "前例에는 조선국 경내에서 선척이 損壞燒毁된 후 나온 釘鐵이나 使物은 난민이 사람과 함께 휴대하여 봉황성으로 보내도록 하고, 여기에서 성경장군아문으로 보내어 조사를 받은 후 違禁貨物이 없다면 그 물건들을 주어 원적지에 돌아가게 한다"고 되어 있다.

16) 春名徹, 전게 논문.

17) 通文館志, 권9-12, 紀年.

18) 小林茂・松原孝俊・六反田豊, 1998, 「朝鮮から琉球へ, 琉球から朝鮮への漂流年表」, 『歷代寶案研究』, 9.

19) 劉序楓, 2006, 「淸代檔案與環東亞海域的海難事件研究－兼論海難民遣反網絡的形成」, 『故宮學術季刊』, 23-3.

20)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1998, 『淸代中朝關係檔案史料續編』, 中國檔案出版社, pp.14-15, 護理山東巡撫國泰摺; pp.489-490, 護理山東巡撫丁寶楨摺.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淸廷은 漂船의 廢鐵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음이 틀림없고 결국 嘉慶 연간에 법례화하여 조선에서 일체의 철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하게 한 것이다. 이 표선을 포함해 漂物을 燒火하는 법은 조선의 독자적인 법처럼 보이는데 그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양선(외국선)의 경우에만 선척을 소화하고 자국의 배는 소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그것은 종교적인 관념에서 유래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법령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조선의 관례가 淸廷의 대국주의에 의해 왜곡된 것, 그리고 漂船燒火의 법도 근대서구의 이양선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3. 漂物燒火之法과 人臣無外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조공질서가 붕괴하게 되는 것은 영국과의 아편전쟁으로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게 되면서이지만, 조선의 외교도 그 영향으로 새로운 외교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조선의 경우 영국의 뒤를 이어 극동진출에 초조하던 프랑스가 1839년의 己亥邪獄으로 파리外方傳敎會 소속 프랑스인 3명이 순교한 것을 기회로 삼아, 조선정부에 항의하고 개국과 통상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외교관계를 맞이하게 된다. 1846년 6월 프랑스 동양함대 사령관 Cecil(瑟西爾) 제독이 모방 신부가 마카오에서 유학시킨 韓國人 신학생인 崔良業을 대동하고 3척의 군함으로 洪州 外煙島 外洋에 나타나서 國書의 전달을 위해 왔다가 실패하고 封書를 놓아둔 채 淸國으로 돌아간 후, 다음해 1847년 香港을 출발한 해군대령 La Pierre(拉別耳)의 지휘 하에 다시 두 척의 군함이 조선의 해안에 출현하였는데, 이 때 프랑스 선척이 全羅道古群山群島의 薪峙島와 扶安郡의 界火島 중간에서 표류하여 배가 침수되면서 총 600여 명의 군인과 물자를 薪峙島로 옮겨 結幕하게 되었다. 당시 La Pierre는 정부에서 파견된 문정관에게 작년에 Cecil 제독이 놓고 간 국서에 대한 회답과 함께 조선과 수호조약을 맺기를 요구하였지만 조선측은 "우리나라는 大淸에 服事하여 他國과의 왕래는 淸帝가 稟請하여야만 할 수 있고, 貴國에 대한 回答을 주는 일도 그러하다"고 하며 거절하였다. [21]

조선측은 국제관계가 조공질서체제에서 만국공법적 체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대적 길목에서 여전히 사대적 외교관계 즉 청국의 허가 없이는 독자적인 외교를 추진할 수 없는 조공국으로서, 人臣無外交의 고전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던 것이다.[22] 인신무외교의 관념은 대외적으로는 외국 書辭(편지)의 왕복조차 지극히 곤란한 일로 만들었고 대내적으로는 표류민에 대한 음식의 무상제공에 대한 선물의 답례도 조정의 지휘를 받지 않고서는 곤란하다고 하여 거절하게 만들었다.[23] 그리하여 人臣無外交의 관념은 프랑스와 같은 외국 대표의 통상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封書나 개인적인 선물의 酬酌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적 관념의 소산일지도 모르는 '漂物燒火의 法'이란 이러한 조공국의 극단적인 인신무외교의 관념의 소산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21) 이원순, 1983, 「開港以前의 國內外事情」, 『(한국사16)근대-개화척사운동』, 국사편찬위원회, p.39, 주60.
22) 人臣無外交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는 夫馬進編, 2007, 『中國東アジアの外交交流史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前書き, 참조.
23) 『同文彙考』』,4, 補贖編, 使臣別單, 丁未別遣京問情官方禹叙手本(이하 方禹叙手本), 55b. "我國服事大淸凡係大小必聽其指揮外國書辭往覆卽是大難事且物件之私獻如無朝廷之指揮不敢擅受至於貴國御像言亦褻慢第我國法禮君王御像臣民不敢仰視況奉來奉去其瀆甚焉此等話莫再提"

www.kci.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측의 소극적인 관념은 근대적인 국가의 외교사절로 온 서양인에게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웠다. 당시 古群山鎭僉事 李東殷 등과 함께 問情에 참여한 조정에서 파견한 漢學譯官 方禹叙의 <問情官方禹叙手本>을 보면 조선정부가 프랑스 표류선 구조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부닥쳤을 때 조선은 기존의 송환절차에 따라 문정을 하려 하였지만, 낯선 외인은 조공질서의 체제에 순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구조물품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려고 하였고, 국서를 전달하여 외교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지만 조선측에서는 이를 인정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반응했다. 그러나 쌍방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어 나가고 있었다. 본고의 주제인 표선의 燒火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서 주목된다.

즉 당시 실어가지 못하고 남은 것은 이곳에 남겨 둘 테니 조선측이 쓰라고 하자, 조선측 문정관은 '漂物燒火之法'으로 응답하고 있다.[24] '漂物燒火之法'이란 본문에서 서술한 대로이지만, 문정관은 洋人과의 문답에서 놓아두고 가면 '漂物燒火之法'에 따라 소각될 뿐이므로 가능한 한 물건을 갖고 갈 것을 권한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소용되는 것이 우리쪽에서는 버리게 될 것이니 양해바란다고 말한다.[25] 그러자 양인들은 후에 와서 다시 가지고 가겠다고 하며 표물을 잠시 위탁해 줄 것을 요청한다.[26] 이렇게 해서 표물은 고군산진에 위탁되는데, 이는 '漂物燒火之法'의 원칙을 깬 것으로 조선시대 표물 처리의 역사상 전례가 없던 사건이었다. 이는 강고한 동아시아적 문명질서가 어떻게 깨어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일 것이다.

4. 결어

조선과 같은 충실한 조공국의 사신조차 가상의 적으로 취급하는 국법이 존재하는 양국관계에서, 崔溥와 같은 표류민이 신원이 밝혀지기까지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것은 당시 표류민이 처한 상례라 할 것이다. 崔溥는 자신의 고초에 비추어서 "유사 이래 표류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었겠는가?"라고 자문하면서 오늘날의 여권/비자와도 같은 제도를 창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崔溥의 제안이 실현되기는커녕 이후 청대의 漂船廢鐵송환사건에서 드러나는 한중관계의 疏遠性은 조공질서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를 반성하게 한다.

24) 方禹叙手本, 54a-b.
25) 方禹叙手本, 55a-b. "我國之法, 漂船不能携回之物, 例於所見處燒火, 雖大淸漂船亦如之", 전게,
26) 方禹叙手本, 57b. 貴國旣無所用燒火, 棄置亦我捨不得, 姑爲留置於此待後來從便搬去爲言第, 此等封授非不知難愼是乎矣, 彼言旣如此勒使燒火只逆其心, 故成出留置件記, 力可以運者, 使之收藏于本鎭公廨, 其不可運者, 計數積置於前幕近處.

www.krm.or.kr